

형법상 보험사기죄의 신설에 관한 찬반론

일 시

2015. 1. 26.(월) 13:30 ~ 16:30

장 소

손해보험협회 3층 대회의실

참 석 자

사회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황만성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 김은경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 박기억 변호사(대한변협 사업이사)
- 김 성 공익사업부장(손해보험협회)

<좌담회 배경>

□ 노명선 교수(사회) : 최근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5,190억 원으로 전년대비 14.5% 상승하여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엄히 대처한다고 하지만 그 수법 또한 너무 정교해서 적발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적발해도 검사의 기소율이나 판사의 징역형 선고 비율 또한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는 왜 줄어들지 않는지, 과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는지, 그 대책의 하나로서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논의의 필요성과 실효성, 그에 따른 법률

상 문제점은 없는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본인소개>



□ 노명선 교수(사회) : 공사 간에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신 교수님, 변호사님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형법상 보험사기죄의 신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피력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 한국 포

렌식학회 수석부회장, 디지털포렌식전문가시험 관리본부장, 한국연구재단 선임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 **황만성** 교수 :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만성 교수라고 합니다. 보험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써 형법에 구체적인 보험범죄의 구성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오경식** 교수 : 저는 15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한국피해자학회 차기회장 및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이자 국회입법지원위원이며, 현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오경식 교수입니다. 증가되는 보험사기를 사기죄와 분리하여 입법함으로써 별도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대한 엄격하고 준엄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은경** 교수 :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은경입니다. 보험사기죄의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범죄는 기본적으로 사기죄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금

용범죄도 사회적 여파가 큰데 보험범죄만 굳이 구분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처벌입법을 해야 한다면 보험사기의 각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측을 모두 아우르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기억** 변호사 : 안녕하세요? 박기억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사업이사로 일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보험법 전문변호사로서 보험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는 크게 고의사고, 가장사고, 그리고 과장사고가 있는데, 고의사고나 가장사고의 경우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과장사고의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형사 사건화하는 것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포기토록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형법에 보험사기죄 도입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김성** 부장 :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사기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 부장입니다. 최근 보험사기가 조직화·대규모화·홍포화되며, 사회불안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법률에 보험사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형법상 보험사기죄의 신설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기죄의 현황과 처벌 사례>

□ **노명선** 교수(사회) : 최근 5년간 10대의 보험사기행위가 3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특히 야간에 음주운전자나 여성운전자 등 취약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과 별도의 합의금을 받아 내는 속칭 ‘한탕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험사기의 현황과 처벌 사례 등을 손해보험협회 김성 부장님께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지요

- **김 성** 부장 :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건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금액이 2010년 기준 약 3조 4천억 원, 최근에는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1인당 7만 원, 1가구당 2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금액은 2013년 기준으로 5천 2백억 원 정도로 누수금액 대비 13~14%에 불과합니다.

이를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사기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체·생명과 관련된 장기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적발금액 기준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위 유형으로 보면 크게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고의사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서류 등을 조작하는 서류조작,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고 보험을 계약하는 고지의무위반, 그리고 보다 많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사고를 과장해서 청구하는 과장청구 등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사기에 있어서는 운전자 바꿔치기, 피해자 끼워넣기, 사고내용 조

작, 손목치기, 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 교통사고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보험금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보험사기의 경우 장기간 허위·과다 입원을 통한 입원일당 편취, 허위장해진단을 통한 진단 보험금 편취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문브로커가 개입하며 지능화·조직화되는 양상입니다.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그 폐해>

□ **노명선** 교수(사회) : 정부는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가 꿈꾸는 풍요로운 사회의 공조(共助)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그 폐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 **박기억** 변호사 : 금감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 원으로 전년(4,533억 원) 대비 14.5% 증가하였고, 전체 보험사기 추정규모가 3조 4천억 원이라고 하면서 보험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기로 적발된 5,190억 원 중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이 전체의 약 78%인 4,052억 원이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금액이 1,138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을 보험사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보험상품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상품이

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보험금 청구 이후에 보험회사의 심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지고 거기에서 불지급 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적발된 금액을 모두 보험사기로 단정하는 것은 보험사기를 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사행계약의 특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보험계약자 모두 사행성이 있어 어느 정도 사기성, 투기적 성격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모두 사기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가지 말아야 할 것까지 형사처벌로 고소된다면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민사청구를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 **황만성** 교수 : 보험사기, 보험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서는 일단 일반 국민의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보험제도를 정당한 보험금 수령 외에, 미처 발생하지도 않은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타내어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역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쉽게 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결합되어 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오경식** 교수 :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몇 년 전 강원도 태백에서 병원 3곳, 주민 33명을 포함 총 410명이 가담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험금을 못타면 바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법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박기억 변호사님께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중 보험회사가 심사를 통해 적발한 금액이 전체의 70%가 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금액이 1천 1백여 억 원에 불과한데 이 정도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처벌한다는 것이 지나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형법을 통해 보험사기를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심사를 통해 적발되는 70% 이상의 보험사기가 지금 암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에도 한계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보험사기를 법제화 시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국민에게 주지시킨다면 범죄 억제 효과도 있고, 처벌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은경** 교수 : 저는 보험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며, 신뢰 구축에 문제를 야기한 쪽은 오히려 보험자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면 보험자가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도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몰아가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악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보험계약단계에서부터 보험금 지급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기성을 구분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처벌로 해결하는 것은 보험에 대한 불신만 악화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 **김성** 부장 : 박기억 변호사님께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전체 금액 5,190억 원 중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금액 4,052억 원은 보험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오해가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서의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적발한 금

액은 박기억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사고조사 과정 중에 사기적 청구임을 확인하고, 청구자도 이를 시인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로 판명된 건이므로 보험사기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액이 크다는 것은 역으로 보험회사들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형법상 보험사기죄의 신설〉

□ **노명선** 교수(사회) :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때마다 국회에서는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발의안으로 「형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등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한 형태로서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황만성** 교수 : 최근 10년 동안 보험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책으로, 특경가법, 보험업법, 형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논의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실정입니다. 보험사기가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법이나 특경가법 등으로 입법논의가 있었던 것은 형법 개정이 워낙 어려워 중간에 거쳐 가는 단계로서, 입법절차를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경식** 교수 : 보험사기와 사기죄는 서로 보충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정책적 강화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한편, 행위 유형과 형태상 다양한 보험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에 흠결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현재의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 상 공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계약 체결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봐야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처벌에 흠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행위나 보험사기 남용죄를 도입해서 처벌의 흠결을 방지해야 합니다.

□ **노명선** 교수(사회) : 보험사기행위를 더 이상 방지하면 보험회사의 재산상 피해라는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자칫 보험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우려마저 크다는 점에서 보험사기죄를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할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죄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는 일반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험사기행위를 현행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은경** 교수 : 보험사기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처벌에 흠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기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처벌은 쉽다고 보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지 처벌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부터 만들어 놓으면 사기범이 양산될 수 있고 보험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를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연성사기와 경성사기 역시 명확

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박기억** 변호사 : 현재 판례를 보면 형법상 사기죄에 의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하여 법조문화하면 오히려 새로운 사기 유형을 처벌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행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면 처벌 받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보험사기죄를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보험사기죄를 두려면 현행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까 오경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실행해 나가지도 않았는데 계약체결만으로 형사처벌한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비음모죄의 경우에도 우리 형법은 살인이나 중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보험사기가 그에 해당 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지 의문입니다.

- **김은경** 교수 :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면, 상해보험에 가입한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었는데 상해에 의한 보험금이 1억 원, 사망에 의한 보험금이 3천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가 이 사람이 사망해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보험자는 3천만 원만 지급하는 상황을 기다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험사기로 볼 수 있을 텐데, 보험사기죄를 둔다고 하면 보험계약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가 더 많은데 보험자의 사기도 포섭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 **황만성** 교수 : 박기억 변호사님과 김은경 교수님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오히려 보험사기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내세울 수 있는 논거입니다.

현행 사기죄의 규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쉽게 포섭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보험범죄가 되는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보험관계에 가지고와서 자신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형법전의 구성요건은 의사결정규범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모른다면 그것은 형법이 의사결정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기죄 구성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오경식** 교수 : 보험남용죄 또는 예비음모죄를 둬으로써 일반 국민이 보험금 수령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다양한 선행 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일반 예방적 기능도 있습니다.

- **김 성** 부장 : 현장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 담당해 오고 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보험사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부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생계형 보험사기에서, 최근에는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조직화·집단화·지능화되며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형법에 규정되면 처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추후 보험사기가 밝혀지더라도 보험금 지급 당시에 보험사기에 대해 의심하고 조사했다면 ‘기망’을 당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인

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어 이런 부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노명선** 교수(사회) :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형법상 보험사기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보험사기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는 어떤가요?

- **황만성** 교수 : 미국 연방정부는 사기적 보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1994년 연방보험사기법을 제정하여 주간(州間)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관련 기망행위를 연방범죄로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도 형법이나 보험법에 보험사기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은 제263조(사기), 제265조(보험남용)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는 제263조 제1항과 별도로 제3항에서 특별히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유형 중 하나로서 일정한 보험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5조는 사기죄에는 이르지 않은 보험범죄의 사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별도로 보험남용죄로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151조도 보험남용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성요건은 독일형법 제265조와 유사하나 독일형법과 다른 점은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개정형법은 보험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인 제198조(보험사기)를 신설하였는데, 액수가 매우 크거나 또는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노명선** 교수(사회) : 살인의 경우에도 불법의 정도나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강도살인, 강

간살인 등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듯이 사기죄도 발생 빈도(頻度)와 죄질(罪質)에 맞게 처벌규정을 달리 하는 것도 형사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행위가 늘어가자 형법상 컴퓨터이용사기죄를 신설한 것도 그러한 취지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기억** 변호사 : 죄질에 맞게 처벌규정을 달리한다는 것인데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입법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김은경** 교수 :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 **박기억** 변호사 : 형법상 컴퓨터이용사기죄는 형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때문에 신설된 것입니다. 보험사기는 현행 형법상으로 처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죄목을 신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오경식** 교수 : 형법제정이 1953년인데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보험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산업이 된 현재, 당시의 형법 환경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범죄의 신설과 컴퓨터사용사기죄 신설과 마찬가지로 보험사기죄도 신설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 **박기억** 변호사 :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컴퓨터, 물건이기 때문에 대상이 사람인 보험사기죄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 **황만성** 교수 : 저는 입법 취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는 대상이 컴퓨터라는 특징 때문에 신설된 것이고, 보험사기

죄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형사정책적 목적, 보험사기를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규범으로 기능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과 같은 수준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죄의 규정과 별도로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의 규정을 두어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보통살인죄의 불법을 초과하는 결합범으로서 강도살인, 강간살인의 불법의 정도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이와 같이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법이 사기죄의 불법유형은 그 폭을 넓게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일반사기죄의 불법을 초과한다기보다는 그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김은경** 교수 : 오로지 형사정책적인 목적이 라면 보험사기 말고도 금융사기도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정책적인 목적만을 고려하다보면 보험사 측에 의해 폐해가 나타날 여지가 많습니다.

- **황만성** 교수 : 금융사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소수만이 저지를 수 있으나 보험사기는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범자의 실질적인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 등에서 보험사기와 구별되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 **노명선** 교수(사회) : 앞서 황 교수님이 외국의 입법례에 대해서 적절히 설명해 주셨듯이 독일에서는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국고 보조금 사기, 금융사기 등을 세분화하는 입법 추세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노명선** 교수(사회) : 만약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자면 구성요건은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상당한지요

- **황만성** 교수 : 구성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매우 어렵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이어야 하므로 그 구체화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형벌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허위로 원인을 날조하거나 손실의 정도를 과장하는 행위, 발생하지도 않은 보험사고를 날조하는 행위,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 행위의 수법, 빈도, 가담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경식** 교수 : 보험사기의 유형으로는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위반, 보험사고 고의 유발, 보험사고 위장, 보험금 허위 혹은 과다 청구 유형 등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을 형법에 반영하는 입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험사기 예비음모죄나 보험남용죄의 규정을 신설하여 사전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안을 보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명선** 교수(사회) : 보험목적 살인의 경우와 같이 결합범 형태로 형법에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지요

- **황만성** 교수 : 보험목적 살인과 같은 결합범 규정 신설에 대하여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합범을 별도로 처벌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결합범을 구성하는 기본적 범죄행위가 전형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범죄를 저지르면서 더 무거운 불법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보험목적 살인이라는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형법이 살인행위에 있어서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 목적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금편취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살인죄의 불법이 커지거나 살인죄의 불법을 초과하는 새로운 불법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살인죄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목적 살인의 경우에는 양형의 단계에서 비난동기 살인의 유형에 해당되고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의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가중 처벌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양형의 단계에서 엄하게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남용죄의 신설에 대해서>

□ 노명선 교수(사회) : 독일은 보험남용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죄는 기망(欺罔)적인 사기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고인 절도, 손괴, 방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행위 단계에서부터 형사 입건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 오경식 교수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남용죄 또는 예비음모죄를 둬으로써 일반 국민이 보험금 수령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다양한 선행 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의 보충성>

□ 노명선 교수(사회) : 개인 간의 거래관계나 경제 질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초기단계에서 부터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거래는 자율적인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형법이 갖는 보충(補充)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지요.

- 황만성 교수 : 형법의 보충성은 민사적인 제재가 가능하면 민사적인 제재로, 그것으로 안 되면 행정적인 제재로,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형벌이라는 수단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의 보험범죄에 있어 민사적인, 행정적인 제재 수단만으로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보험범죄는 일부 개인에 의해 발생하고, 개인적 법익인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지만, 그 규모나 대상이 보험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범죄, 경제범죄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돌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방지해야 하는 대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형법상 보험사기죄의 신설은 보충성의 원칙하고 배치되지 않습니다.

- 오경식 교수 :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형법이 갖는 보충적 기능이란 어떠한 법익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사회윤리적 사회관을 기초로 한 형사정책의 문제이며, 형법은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는 보호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기는 최근 급속히 양적, 그 질적 형태가 늘어나고 있어 기존의 형사적 제재의 실효성이 무력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형사제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형

사입법으로 대국민 홍보와 올바른 보험의 정착을 위해 형법의 보충성이 작용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박기억** 변호사 :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보험계약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분쟁이 있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이나 기왕증 관련 문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점에서 형법의 보충적 기능은 필요합니다. 즉,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법적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법의 기능은 여기에서는 되도록 개입하지 말고 최후수단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 **김은경** 교수 : 형사적 처벌이나 개인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되거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형법의 보충성을 통해 이 규범이 들어왔을 때 보험자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는데 보험사기죄를 만든다면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명선** 교수(사회) : 보험사기의 다양한 형태를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형법상 조문화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 상 개별적인 유형에 상응한 범죄구성요건을 만들어 형사제재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지요?

- **황만성** 교수 : 보험업법에 구체화된 요건들을 형법에 끌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규범력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일반 국민에게 확실적인 규범으로써 기능토록 하기 위함인데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업법에 들어옴으로서 국민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확실적인 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김은경** 교수 : 보험업법은 보험업에 대한 행위 규제와 영업 규제를 하는 법인데 여기에 형사적인 제재를 삽입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 **박기억** 변호사 : 새롭게 범죄구성요건을 만들어 첨부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해결방안>

□ **노명선** 교수(사회) : 토론자분 들의 생각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사기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형법상 보험사기죄의 신설 이외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 **황만성** 교수 :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입니다. 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은경** 교수 : 계약체결단계에서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제고해야하고 그럼으로써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민사법, 형법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정보를 통합 관리한다면 보험사기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경식** 교수 : 형사법적 입법을 통한 모든 보험사기의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입법을 통한 해결방안은 최소한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을 통해 대 국민 홍보의 강화와 보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보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가와 관련 단체 및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보험

사기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기억 변호사** : 우선 필요한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복보험을 미리 확인해서 사기로 나가지 못하도록 확인의무를 강화하거나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실제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보험회사에게 부담시켜서 보험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제도에 대해서도 상법 제651조의2에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조문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개선한 후 형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편,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자에게 요구되는 만큼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 **김성 부장** : 보험사기가 확산되면서 민영보험 뿐 아니라 공영보험, 즉, 국가재정의 누수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에 대해 벌금형은 크게 늘어난 반면, 징역이나

집행 유예는 크게 감소하는 등 처벌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험사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반드시 법제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노명선 교수(사회)** : 논의에서 빠진 부분입니다만 보험사고 조사요원들의 질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 보험가입자들은 자신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려한다는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조사요원들의 질적인 수준 향상이나 조사기법, 특히 최근의 컴퓨터 포렌식 분야에 대한 능력제고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험사기가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서 형법적 측면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학계와 법조계는 물론이고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